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고영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596
------	------

발의일자 : 2024. 8. 22.

발 의 자 : 고영찬 의원

찬 성 자 : 고성미, 정순기 의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셔틀버스의 운영 및 이용대상자, 이용료, 운행범위, 운행시간 규정
(안 제3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4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2) 입법예고: 2024. 8. 23. ~ 2024. 8.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공공시설 이용 및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운영하는 교육·복지·문화·예술·체육·도시농업 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스마트도서관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운영)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금천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2.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3. 구에서 설립·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교육·복지·문화·예술·체육·도시농업 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제5조(이용료)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운행범위) ① 셔틀버스는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노선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행한다.

②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제7조(운행시간) 셔틀버스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다. 다만, 공공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요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74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6. 3. 29., 2020. 12. 22., 2022. 1. 18.>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 8. (생략)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1.]